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주하며

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「작은도서관 정책」 제안

01

작은도서관 운영의 현실화

- 작은도서관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을 요구한다.
 -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전달 및 평생학습권, 문화향유권, 정보격차 해소권을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. 그러나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와 자부담으로 운영된다. 운영자의 기본소득 보장과 운영비 지원이 절실하다.

02

작은도서관 지원조직 설치

-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모으고 바른 정책과 소통구조를 담당하여 건강한 독서문화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조직구조를 요구한다.
 -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사무는 전담인력 부재, 타업무와 병행, 잦은 인사개편 등으로 담당자의 작은도서관 이해도가 낮아 지원 및 관리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.
 -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근거한 기구로서 광역단위의 거시적인 작은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작은도서관지원센터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편성과 지원책을 세우고 민관협력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두어 작은도서관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성 있는 관리와 지원을 해야한다.

03

작은도서관 조례개정

-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명시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방향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.
 - 작은도서관 조례는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지만, 시·도, 시·군·구마다 조례의 명칭이 지원조례, 진흥 조례,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제각각이고 운영과 지원 수준의 편차가 크다. 이로 인해 작은도서관의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다.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근거한 조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.